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033

제출연월일: 2024. 10. 3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 중인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·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중 "제1항"을 "제1항, 제2항 또는 제4항"으로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출자・출연 기관의 명칭
- 2. 사무소의 위치
- 3. 설립 지방자치단체
- 4. 사업 내용
- 5. 공동 처리 사항

- 6. 출자・출연 방법
- 7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 중인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4조제3항"을 "제4조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"을 "제1항"으로, "설립 타당성"을 "설립·운영의 타당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・출	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・출
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(생 략)	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
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	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
	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
	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
	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
	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'민
	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・
	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
	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<u> </u>	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
	<u>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</u>
	<u>다.</u> 1. 출자・출연 기관의 명칭
	1. 철자·철천 기원의 정정 2. 사무소의 위치
	3. 설립 지방자치단체
	<u> </u>
	5. 공동 처리 사항
	6. 출자·출연 방법
	7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<u><신 설></u>	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③ (생략)

- 제7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 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) ① (생 략)
 -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<u>제4</u> <u>조제3항</u>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시·도지사는 행 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와 협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
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
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
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
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
<u>수 있다.</u>
⑤ 제1항, 제2항 또는 제4항
<u>⑥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7조(출자・출연 기관의 설립・
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
협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제4</u>
조제6항

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 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설 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 문 인력 및 조사·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•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③ <u>제1항</u>
<u>설</u>
립·운영의 타당성
<u>.</u>
④ (현행과 같음)